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2. 12 선고 2024가단5341901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경기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도훈

피고1. A

2. 주식회사 B

3. C

변론 종결2024. 11. 21.

판결 선고2024. 12. 12.

주 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34,127,350원 및 그중 34,082,701원에 대하여 2024. 1. 23.부터 2024.

10. 25.까지는 연 8%,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주식회사 B과 피고 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3. 7. 26. 체결된

매매계약은 34,127,350원 및 그중 34,082,701원에 대하여 2024. 1. 23.부터 2024. 11.

14.까지는 연 8%,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한도에서 이를
취소한다.

나.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34,127,350원 및 그중 34,082,701원에 대하여 2024. 1. 23.부터

2024. 11. 14.까지는 연 8%, 그 다음날부터 2024. 11. 21.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가. 피고 주식회사 B과 피고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3. 8. 3.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C은 피고 주식회사 B에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23. 8. 3. 접수 제4321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1, 3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나. 피고 2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판사김영수

별지